

2019년도 제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11.(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분과위원장 대행),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3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46건(안건번호 제2019-11148호~1315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3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사이트명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사이트명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비실명 처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사이트명은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11148~1315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246건임
안전번호 제2019-11148호는 익명의 일반인 신고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하였음
'티스토리' 이용자가 일본 만화 '원피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과 링크로 연결되는 텀블러 블로그에 게시된 만화 저작물을 보여주며)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서 '원피스' 한 화 전체 분량을 게시하고 있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19-11148호 '티스토리' 이용자가 게시한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링크 설정 게시물을 선택하면 연결된 사이트에서 만화 전체를 볼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시정권고 하는 것에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148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150호는 익명의 일반인 신고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하였음

‘○○○○○○○○’ 사이트 운영자가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누르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는 해외 웹페이지에 연결되어 영상을 감상할 수 있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19-1115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링크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운영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 A 위원 : 검토보고 중 인터넷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과거 시정권고 사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인터넷호스팅사업자인 ‘△△△△’에 시정권고를 한 적이 있으며, 통상적인 시정권고 이행과 달리 ‘△△△△’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권고 사실을 통지하여 불법복제물이 삭제 처리된 바 있음
- A 위원 : 통상적인 시정권고 이행과 달리 불법복제물이 삭제 처리된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 공문을 받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해야 하는데 호스팅사업자인 '△△△△'는 게시물 삭제권한이 없다고 함
'△△△△'에서 '○○○○○○○○' 운영자에게 보호원의 시정권고 공문 내용을 알려주고 협조를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임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시정권고 이행과는 다름
- A 위원 : 실제로는 시정권고 집행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행된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3분과위원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불법복제등에 대한 시정권고 가능여부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입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체위원회 논의안건으로 부의한 바 있음
- B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함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하였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사료됨
과거 논의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A 위원 : 지난 제2분과위원회와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

○○○○○○'에 직접 시정권고를 하기로 의결한 것인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임
- A 위원 : 2018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사안에 대해 부결한 것으로 기억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현재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사안에 대해서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고 있음
- A 위원 : 지난 제2분과위원회와 제3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호스팅사업자인 '△△△△'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 사이트의 이용자가 게시했다면 '○○○○○○○○'에 시정권고 했을 수 있음
- A 위원 : 심의할 때 혼동되지 않도록 추후 각주를 기재할 때 명확해야 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제2분과위원회에서 2018년에 심의한 내용을 보여 주며)당시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에 시정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
- A 위원 : '○○○○○○○○'가 직접 게시한 것이 명확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시물 목록에 접근해 봤는데, 위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글쓰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타 분과에서는 직접 게시가 불명확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닌 호스팅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시정권고 이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것이 100% 확실하지 않으므로 일단 '○○○○○○○○'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만약 이행이 안 될 경우 다른 방안을 찾아보기로 논의한 것으로 기억함
- A 위원 : 2018년도 '○○○○○○○○'를 심의했을 때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직접 게시가 불명확했으나 현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온라인 서비스 직접 게시가 명확하므로 '○○○○○○○○'가 아닌 호스팅업 체인 '△△△△'에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것에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150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3159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하였음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영화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직접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해당 밴드는 마을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하였으나 일부 이용자가 2013년 국내 개봉한 '노리개' 영화 저작물을 파일형태(mp4)로 게시함
해당 밴드는 심의일 기준으로 회원이 236명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다운로드 기간은 9일 남아있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13159호 밴드 내 영화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공유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떻게 심의·의결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답변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파일 다운로드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시정권고 하는데 이의 없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159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11149호, 제2019-11151호~13158호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음악, 출판,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화면을 보여주며)2019년 1월~3월에 tvn에서 방송한 '로맨스는 별책부록'과 2019년 현재 방영 중인 tv드라마가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건번호 제2019-11149호, 제2019-11151호~1315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웹하드에 게시된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이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같은 의견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11149호, 제2019-11151호~13158호는 만장일치로 모두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1148~13159호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8.

분과위원장 대행 강호갑

위원 정태호